

#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전부개정 2014. 9. 11. 제1349호  
1차개정 2014. 12. 10. 제1363호  
2차개정 2015. 6. 16. 제1385호  
3차개정 2015. 8. 18. 제1388호  
4차개정 2015. 9. 30. 제1393호  
5차개정 2015. 11. 18. 제1400호  
6차개정 2016. 4. 29. 제1420호  
7차개정 2016. 12. 7. 제1431호  
8차개정 2017. 8. 8. 제1447호  
9차개정 2018. 2. 28. 제1457호  
10차개정 2019. 3. 28. 제1478호  
11차개정 2019. 4. 15. 제1482호  
12차개정 2019. 5. 16. 제1488호  
13차개정 2019. 11. 11. 제1499호  
14차개정 2020. 4. 29. 제1511호  
15차개정 2020. 11. 3. 제1553호  
16차개정 2021. 5. 26. 제1584호  
17차개정 2021. 7. 12. 제1587호  
18차개정 2021. 9. 15. 제1589호  
19차개정 2022. 1. 6. 제1594호  
20차개정 2022. 6. 3. 제1609호  
21차개정 2022. 8. 12. 제1612호  
22차개정 2023. 4. 4. 제1632호  
23차개정 2023. 6. 21. 제1636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학생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우리 대학은 인간사회와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양과 인격을 완성하고, 기초학문과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세운다.

1.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2.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배양한다.
3. 폭넓은 교양교육에 기초하여 전인적인 인성을 기른다.
4. 초등학교 교과교육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교과의 전문지식과 교수능력을 배양한다.
5.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하여 생활지도 능력과 자질을 배양한다.
6. 새로운 교육이론을 탐구하여 현장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수행능력을 기른다.
7.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8.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교직전통의 수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3조(교육조직)** ① 우리 대학에 대학과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학문 분류상 전문적 독립성과 사회적 수요,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에 심화과정을, 대학원에 학과 전공을 두어 운영한다.
- ③ 대학에 두는 심화과정 및 대학원에 두는 전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대학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입학정원: <별표1>)
- 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별표2>과 같다.

**제4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원이라 하며, 전임교원은 대학의 심화과정이나 대학원의 학과전공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에 겸무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

- ② 총장은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 ③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겸임교원 등)** ①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강사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겸임교원 등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년)** 전임교원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기획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총무처장은 서기관이나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4.29.>, <개정 2020.11.3.>
- ③ 각 처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0.4.29.>, <개정 2020.11.3.>
- ④ 제1항의 조직에 두는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무처)** 교무처는 교육과정, 수업, 학점, 교원인사, 교원양성전담업무, 교원자격 검정업무, 교육실습지원 및 부설학교협력센터 운영, 교양교육지원센터 운영, 그 밖의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9.>

**제13조(학생처)** 학생처는 입시, 학적, 학생 생활지도, 장학, 후생, 보건, 학생병무, 학생 복지, 학생상별, 학생단체 지원 및 지도, 학생 제증명 발급, 학생상담센터 운영, 장애 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그 밖의 학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9.>

**제13조의2(기획처)** ① 기획처는 대학발전계획 및 평가관련업무, 대외협력기획, 대학홍보, 예·결산 기획업무, 총장이 지정하는 외부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및 운영, 성과관리 및 연구 업무, 대학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기금재단 관리, 국제교류센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4.29.>

- ② 기획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대학원 행정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행정실은 대학원의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총무처)** 총무처는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기록물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 공사 및 시설 관리,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타 처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4.29.>, <개정 2020.11.3.>

### 제3절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등

**제15조의2(학술문화원)** ① 학술문화원은 학술정보 지원, 대학문화 기획 및 지원, 도서관·교육역사관·교육방송국·대학신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00.00.>

② 제1항중 도서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정한다. <신설 2023.4.4.>

③ 학술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4.4.>

**제15조의3(정보전산원)** 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정보 전산원을 둔다. <신설 2023.4.4.>

②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4.4.>









## 제2절 입학과 등록

**제47조(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전입학, 재입학, 복적 등의 입학 시기는 학기 초 21일 이내로 한다.

**제48조(입학자격)** ①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대학원의 입학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전입학)** 대학의 전입학은 여석이 있을 경우 타 교육대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다.

**제50조(재입학)** ① 대학의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교무위원회를 거쳐 교수회의 심의·의결로 허가할 수 있으며, 병역복무의무 기간은 재입학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2.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3. 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개정 2018.2.28.>

② 대학원 재입학은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재학기간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제51조(입학전형)** ①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정하되,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2. 고등학교 내신 성적

3. 면접고사 성적

4. 서류평가 성적

③ 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면접고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입학전형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전공분야에 대한 필답고사와 실시고사를 포함할 수 있다. 대학원의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52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 입학전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대학원생의 학기당 이수학점을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재이수)** ① 낙제점(F)인 경우 필수과목은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과목을 재이수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 이수하여 그 학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교과목의 취득성적이 D+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은 취득성적이 C<sup>0</sup>이하인 경우에도 재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③ <신설 2015.9.30.> <삭제 2019.11.11.>

**제66조(전입학, 재입학 및 복적자 학점인정)** 전입학, 재입학 및 복적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학점(학적부에 기재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제67조(국내·외 대학 학점 인정)** 대학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은 이를 우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8조(국내 · 외 대학원 학점 인정)** ①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 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야간제에 입학하고 휴학한 후 계절제에 복학하면 야간제에서 취득한 학점을 계절제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5절 시험과 성적

**제69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또는 학년말에 그 학기 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행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70조(응시자격)** 학생은 총 수업 시간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다만,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대학원의 경우는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71조(대학 성적)** ① 학업 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D<sup>0</sup> 이상을 급제로 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제7절 등록금

- 제81조(등록금 책정 및 납부 의무)**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할 경우라도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사람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법 제11조제4항의 인상을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그 밖에 등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한다.

**제83조(복학자의 등록금)**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사람이 복학한 경우에 등록금이 휴학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은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8절 공개강좌·연구생·외국인학생

**제84조(공개강좌)** 우리 대학은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지도하기 위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85조(연구생)** ① 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자격·등록·수업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외국인학생)** ① 수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전공에는 외국인 학생을 둘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의 자격, 등록 및 증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

### 제1절 학생 활동

**제87조(학생 권리 존중)** 우리 대학은 학생의 인격과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학생이 최고의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총학생회 설치)**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풍을 쇄신하고, 자치능력을 배양

하기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총장은 국가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총학생회 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 차장과 대의원(이하 “간부”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하며, 학생총회 및 학생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받게 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 간부로 당선 또는 선임된 사람은 학생처장에 통보한다. <개정 2020.4.29.>

④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과 그 밖의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9조(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의 경비는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수 및 집행한다.

**제90조(학생단체의 조직)** ① 학생단체를 조직하려 할 때에는 학생처장이나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된 단체는 그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91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 및 인권 침해 등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6.12.7.>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할 때에는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2조(간행물 발간)** (삭제) <2021. 9. 15.>

## 제2절 장학

**제93조(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규율과 상벌

**제9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9. 15.>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 진술, 증거 제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6조(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교직원 및 학생은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5장 학칙 개정

**제97조(학칙 개정)** ① 학칙 개정은 총장이나 재적 3분의 1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학생의 요구로 발의된다.<개정 2015.11.18.>>

②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 개정은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 후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제98조(학칙시행)** 이 학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제1349호, 2014. 9. 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칙의 폐지)** 대학원 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학칙 통합에 따른 적용 특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우리 대학 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교육지원과”를 “교무과(처)”로 한다.
2. “교육지원과장”을 “교무과(처)장”으로 한다.
3. “학생지원과”를 “학생과(처)”로 한다.
4. “학생지원과장”을 “학생과(처)장”으로 한다.
5. “총무과”를 “총무과(사무국)”으로 한다.
6. “총무과장”을 “총무과장(사무국장)”으로 한다.
7. “정책개발원(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

## 부칙<제1363호,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385호, 2015. 06. 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88호, 2015. 08.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3호, 2015. 09.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00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77조의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420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31호, 2016. 12. 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47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57호, 2018. 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78호, 2019. 3.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2호, 2019. 4. 15.>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8호, 2019. 5. 16.>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99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65조의 제②항의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511호,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우리 대학 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교무과(처)”를 “교무처”로 한다.
2. “교무과(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3. “학생과(처)”를 “학생처”로 한다.
4. “학생과(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5. “총무과(사무국)”를 “총무처(사무국)”으로 한다.
6. “총무과장(사무국장)”을 “총무처장(사무국장)”으로 한다.

**부 칙<제1553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84호,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87호, 2021.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89호, 2021.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94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09호, 2022.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12호, 2022. 8.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32호, 2023. 4. 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우리대학 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교육정보원” 을 “정보전산원” 으로 한다.
2. “교육정보원장” 을 “정보전산원장” 으로 한다.

**부 칙<제1636호, 2023. 6. 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의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초등교육학과	286명

[별표 2] 대학원의 입학정원

입학정원
234명

청주교대 제 호

## 졸업증서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 초등교육(심화과정) : 교육)

학위번호 : 청교○○○○ - 학○○○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